

#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 심사경과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 가. 제안사유

-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 및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급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 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지원대상(안 제3조)
    - 출산장려 지원금은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 장학금은 관내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한 대학생과 시 인구증가 시책에 협력한 대학생이나 대학교에 지급
  - 지원내용(안 제4조)
    -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아이는 120만원, 셋째아이 이상 180만원 이내로 지급
    - 출산축하금 : 셋째아이부터 1인당 30만원 지급
    - 장학금 : 1인당 50만원 이내 지급 등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31일 조례 제655호로 제정·공포되어 그동안 인구증가 시책추진 일환으로 「제천시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으로 시행되어 온 것으로
- 2005년부터 7월말까지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 관련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출산축하금으로 2005년도 3천 8백만원, 2006년도 4천만원, 2007년 1천 4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셋째아 이상 1인당 30만원씩 집행하였으며, 출산장려금으로는 2007년 둘째아 120만원씩 지급 8천4백만원과 셋째아 이상 180만원씩을 지원하여 3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집행현황은 2005년도 장학금 및 배낭연수비로 8천만원, 2006년 장학금 1억7천1백5십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예산액 1억7천1백5십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집행액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 출산장려금은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에게

- 장학금은 관내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한 대학생과 시 인구증가 시책에 협력한 대학생이나 대학교에 지급하도록 지원대상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4조의 지원내용으로는

-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아이는 120만원, 셋째아이 이상 180만원 이내로

- 출산축하금으로 셋째아이부터 신생아 1인당 30만원을

- 장학금은 1인당 50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비율 중 주민등록 전입 대학생을 70%로하고 인구증가 시책에 협력한 대학생을 30%로 선발하여 지급하며, 학교별

장학금 지원액은 예산범위 안에서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배분 지급 하도록 성안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혼란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다른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 하여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2회추경 예산 중 출산 축하금으로 부모가 모두 우리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라 하였는데 시청홈페이지 공고문에는 출산 부모(부 또는 모)로 표기가 되어 있음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바, 부모 중 어느 한 분만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지요? (박기석 의원)

### 나. 답변요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 둘째아이는 월 10만원씩 120만원, 셋째 아이는 180만원을 주게 되어 있으며 그것이 도비보조가 50%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시비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순수한 시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첫째아이는 부 또는 모로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5. 소수의견

수정안 검토

## 6. 토론요지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함.

##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7. 09. 06 .

제 안 자 : 강현삼 위원

### 1. 수정이유

- 본 조례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것으로 출산장려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제2조 2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2. 수정 주요골자

- 제2조 2호의 내용을 “출산장려 지원금”이라 함은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를 “출산장려 지원금”이라 함은 부모( 단, 첫째아이는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로 수정

##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정의) 2호 「“출산장려 지원금”이라 함은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를 ⇒ 「“출산장려 지원금”이라 함은 부모(단, 첫째아이는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로 수정함.

#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출산장려 지원금"이라 함은 <u>부모</u>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출산장려 지원금"이라 함은 <u>부모(단, 첫째아이는 부 또는 모)</u>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p>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서명서

의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김용수	—	
강현삼	—	
박성하	—	
최건중	—	
박기석	—	
양현재	—	